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정책팀장 손용석 [6571]/ 팀원 문성현 [6580]/ E-mail: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9962호

시행일자 2017. 12. 2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전부개정 안내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8호(2017.12.20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52호, 2016. 12. 26)을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개정 사항 -

○ 생애전환기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통합하고,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부 적용하는 건강검진 근거마련(제2조)

○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연령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시기 조정(제8조)

○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·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(제10조)

○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장애인 안전·편의 관리비 지급 근거 마련(제13조)

○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으로 적용(별표 1. 단서)

○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상담, 건강교육 및 상담비용 각각 6,600원→7,920원(발달평가), 건강교육 9,000원→10,800원(건강교육)으로 현실화 및 영유아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(별표 3)

○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및 서식 보완

○ 시행일 : 2018. 1. 1.

붙임: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